

참고 1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p>제4조(협업검사센터장의 임무) 협업검사센터장(협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통관검사(지원)과장을 포함하며 이하 “협업검사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p> <p>1. ~ 6. (생략)</p> <p>7. 협업부처 공무원 등의 출·퇴근, 연가, 출장 등 복무 관리</p> <p>8.·9. (생략)</p>	<p>제4조(협업검사센터장의 임무) -----</p> <p>-----</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등(대체인력포함)의 -----</p> <p>-----</p> <p>8.·9. (현행과 같음)</p>	<p>○ 협업부처 공무원(대체인력)의 복무관리</p>
<p>제5조(협업부처 공무원 등의 임무) 협업부처 공무원 등은 원활한 안전성 검사 수행을 위하여 협업검사센터장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p> <p>1. ~ 5. (생략)</p> <p>6. 협업검사센터장에게 출·퇴근, 연가, 출장 등 근무상황에 대한 보고</p> <p>7. (생략)</p>	<p>제5조(협업부처 공무원 등의 임무) -----</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근무상황 및 부재시 대체인력 지정 -----</p> <p>-----</p> <p>7. (현행과 같음)</p>	<p>○ 협업부처 근무자 부재시 대체근무자 투입</p>
<p>제6조(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구성) ① 법 제246조의3 및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이하 “협의</p>	<p>제6조(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구성) ① -----</p> <p>-----</p> <p>-----</p>	

현행	개정안	비고
<p>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p> <p>1. (생략)</p> <p>2.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협업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p> <p>가. ~ 라. (생략)</p> <p>마. 환경부 <u>자원순환정책과장</u></p> <p>바. 환경부 <u>화학안전과장</u></p> <p>사. 고용노동부 <u>산업보건과장</u></p> <p>아. ~ 파. (생략)</p> <p><신설></p> <p>② (생략)</p> <p>제7조(협의회 목적) 협의회는 법 시행령 제25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p> <p>1. (생략)</p> <p><신설></p> <p>2. (생략)</p> <p>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안전성 검사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2조(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 <u>생활폐기물과장</u></p> <p>바. ---- <u>화학물질정책과장</u></p> <p>사. ----- <u>산업보건기준과장</u></p> <p>아. ~ 파. (현행과 같음)</p> <p>하. <u>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장</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협의회 목적)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법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u></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안전성 검사,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2조(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절차) ① --</p> <p>-----</p>	<p>○ 협업부처 직제개편으로 직책 수정 및 안전성검사 시 행 위원추가</p> <p>○ 관세법 시 행령 개정사항 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관세청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관장과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1. <u>방사능 · 전염병</u> 등 국민안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p> <p>2. ~ 4. (생략)</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u>별표2</u> 안전성 검사 수행을 위한 사전점검표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p> <p>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 경우 제7조제2호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하고,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인력, 설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p>	<p>----- -----</p> <p>1. <u>방사능 · 전염병</u> ----- ----- ----- -----</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 <u>별표 2</u> ----- ----- ----- -----</p> <p>③ ----- ----- ----- ----- ----- ----- ----- -----</p>	<p>-----</p> <p>○ 띄어쓰기 수 정</p> <p>○ 띄어쓰기 수 정</p> <p>○ 띄어쓰기 수 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검사 대상물품을 <u>별표1</u>과 같이 지정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⑤ 관세청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를 요청받거나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협의회에 상정하지 <u>아니하고</u>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p>	<p>----- <u>별표 1</u>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p> <p>----- <u>않고</u> -----</p> <p>-----.</p>	<p>○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p>
<p>제13조(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기준) ① (생략)</p> <p>②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중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또는 해제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p> <p>1. 안전성 검사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수출입신고 물량, <u>적발실적</u>(비율·건수 등) 등이 현저하게 낮아져 안전성 검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 5. (생략)</p>	<p>제13조(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p> <p>----- <u>적발 실적</u> -----</p> <p>-----</p> <p>2. ~ 5. (현행과 같음)</p>	<p>○ 띄어쓰기 수정</p>
<p>제14조(검사대상 선별 등) ① (생략)</p> <p>②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u>검사결과</u>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우범요소 등 선별기</p>	<p>제14조(검사대상 선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검사 결과</u> -----</p> <p>-----</p>	<p>○ 띄어쓰기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준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선별기준을 수정 및 보완하여 관세청장(수출입안전검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 ----- -----</p>	
<p>제15조(안전성 검사) ① (생략) ② 안전성 검사는 <u>서류심사와 물품검사</u> 또는 <u>서류심사</u>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물품검사는 전량검사, 발취검사, 분석검사 <u>방법으로</u> 실시한다.</p>	<p>제15조(안전성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u>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u> ----- ----- <u>방법 등으로</u> 실시한</p>	<p>○ 중복표현 삭제 등 조문정비</p>
<p>③ ~ ⑨ (생략) ⑩ 수출입 담당직원은 안전성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신고서를 처리한다. 다만, 수출입 담당직원이 신고서를 검토하여 안전성 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안전성 검사 사유와 다른 <u>검사사유</u>가 중복되어 선별된 신고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에 따라 추가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신고서를 처리할 수 있다.</p>	<p>다. ③ ~ ⑨ (현행과 같음) ⑩ ----- ----- ----- <u>검사 사유</u> ----- ----- -----</p>	<p>○ 띄어쓰기 수정</p>
<p>제16조(분석실 운영) ① (생략) ② <u>분석대상</u>은 어린이제품, 화학물질, 석면함유</p>	<p>제16조(분석실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u>분석 대상</u>-----</p>	<p>○ 띄어쓰기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의심물품, 개인이 반입하는 전자상거래 식품류 등 유해물질 검출이 우려되는 물품으로 한다. ③ ~ ⑤ (생략)</p>	<p>----- ----- 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7조(분석접수 및 회보) ①·② (생략) ③ 분석담당자는 배부된 물품의 처리 시 <u>분석 결과</u>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분석시료 영상자료(사진을 포함한다)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 ④ (생략)</p>	<p>제17조(분석접수 및 회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분석 결과</u> ----- ----- ④ (현행과 같음)</p>	<p>○ 띄어쓰기 수정</p>
<p>제19조(협업부처 등에 안전성 검사 요청) ①·② (생략) ③ 협업검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u>안전성 검사</u>를 요청하기 위하여 <u>견본</u>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법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u>안전성 검사</u> 요청을 받은 협업부처 검사기관은 최대한 신속하게 <u>검사결과</u>를 협업검사센터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⑤ (생략)</p>	<p>제19조(협업부처 등에 <u>분석검사</u> 요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분석검사</u> ----- ----- <u>견본</u> ----- ----- ④ ----- <u>분석검사</u> ----- ----- <u>검사 결과</u> ----- ----- ⑤ (현행과 같음)</p>	<p>○ 용어수정 및 관세법 개정 용어 반영 ○ 띄어쓰기 수정</p>
<p>제21조(통관보류 등) ①·② (생략) ③ 세관장은 안전성 검사에 장기간 소요되어 선량한 <u>수출입 업체</u>의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경우 협업부처와 협의하여 안전성 검사가 완료</p>	<p>제21조(통관보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수출입업체</u> ----- -----</p>	<p>○ 수출입 업체는 사전에 등재된 하나</p>

현행	개정안	비고
<p>되기 전에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라 통관을 허용한 물품이 안전성 검사결과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협업부처에 통보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제품의 수거 및 행정제재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p>-----.</p> <p>④ ----- 검사 결과----- ----- -----.</p>	<p>의 단어 ○ 띄어쓰기 수정</p>
<p>⑤ (생략)</p> <p>제22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① 세관장은 안전성 검사결과 법 제226조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성분·표시·품질 등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령 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1. ~ 6. (생략)</p> <p>7. 그 밖에 세관장이 안전성 <u>검사결과</u> 범칙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수출입담당과에서 수행하며, <u>조사결과</u>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p>	<p>⑤ (현행과 같음)</p> <p>제22조(자체조사 및 조사의뢰) ①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u>검사 결과</u>----- -----</p> <p>② ----- ----- <u>조사 결과</u>----- -----.</p> <p>③ ----- -----</p>	<p>○ 용어 변경 반영</p> <p>○ 띄어쓰기 수정</p> <p>○ 띄어쓰기 및 변경 용어 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u>고발의뢰</u>를 하여야 한다.</p> <p>④ 수출입담당과장은 제2항의 통고처분 및 제3항의 <u>고발의뢰한 경우에는 관련</u> 내용 및 결과를 협업검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업검사센터장은 해당 협업부처에 통보하여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p>-----</p> <p>----- <u>조사의뢰</u> -----.</p> <p>④ -----</p> <p>----- <u>조사의뢰한 경우에는 관련</u> -----</p> <p>-----</p> <p>-----</p> <p>-----</p>	<p>○ 변경 용어 반영</p>
<p>제23조(정보관리 등) ① (생략)</p> <p>② 협업부처 공무원 등은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u>아니 되며</u>,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u>아니 된다</u>.</p> <p>③·④ (생략)</p>	<p>제23조(정보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안되</u> -----</p> <p>----- <u>사용할 수 없다</u>.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p>
<p>제24조(정보공유 등) ① <u>협업부처의 장은</u> 안전성 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중 유통과정에서 적발된 불법물품 및 관련업체 정보 등을 관세청장에게 제공하고, 관세청장은 제공받은 정보를 검사선별 기준 등 수출입 물품의 위험 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관세청장과 협업부처의 장은 신속하고 정확</p>	<p>제24조(정보공유 등) ① <u>법 제264조의10에 따라 관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협업부처</u>-----</p> <p>-----</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 관세법 개정 사항 반영</p> <p>○ 띄어쓰기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한 정보공유를 위하여 협업검사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는 부처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u>인증·허가정보</u> 및 유통단계 위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야 한다.</p> <p>④ (생략)</p> <p>제25조(준용규정) 안전성 검사에 대하여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수입물품 선별검사 등에 관한 훈령」,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준용한다.</p> <p>제2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u>2020년 1월 1일</u>을 기준으로 매 3년이</p>	<p>-----</p> <p>-----</p> <p>-----</p> <p><u>인증·허가정보</u> -----</p> <p>-----</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5조(준용규정) -----</p> <p>-----</p> <p>-----</p> <p>-----,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수입물품 검사 등에 관한 훈령」,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관세국경관리 통합위험관리에 관한 훈령」을 -----</p> <p>제26조(재검토기한) -----</p> <p>-----</p> <p>----- <u>2022년 1월 1일</u> -----</p>	<p>-----</p> <p>-----</p> <p>-----</p> <p>-----</p> <p>○ 준용 규정 용어 개정 및 추가 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신 설></p>				<p>-----</p> <p>-----</p> <p>-----</p> <p>부 칙 <고시 제2021-호(2021. . .)></p> <p>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용어의 명확화 및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 시행내역 반영</p>
[별표 1]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 (제12조제3항)				[별표 1]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 (제12조제3항)				
협업부처	대상물품	안전성 관련 법령	비고	협업부처	대상물품	안전성 관련 법령	비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수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수입	
	전기용품,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환경부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	환경부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	
	폐기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수출입		폐기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수출입	
	외래생물 야생동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		외래생물 야생동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류(개인전자상거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류(개인전자상거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인체용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고용노동부	석면함유제품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석면함유제품	산업안전보건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	전파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 등	전파법	"	
산림청	우드펠릿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산림청	우드펠릿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탄류				목탄류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대외무역법	수출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대외무역법	수출	
	<신 설>				삼상유도전동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수입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능 물질 및 그 가공제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수입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능 물질 및 그 가공제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수입	
7개 부처	14개 물품	13개 법령						